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,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(안 제20조 제3호, 제32조)

-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

나.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(안 제21조 제2항)

-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(단,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)

다. 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(안 제31조 제1항)

- 자동차 이전등록 및 세법의 상속기간(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)과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기간(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)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해당”을 “이하 “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”라 하며, 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사업용”을 “자동차운수사업용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호 중 “9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단서 중 “말소등록된”을 “말소등록된 자동차운수사업용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)”을 “(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58조제4항”을 “법 제58조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6항제7호”를 “제5항제7호”로 한다.

제32조 중 “9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 영 시행 이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및 이 영 시행 이후 등록번호를 변경한 자동차는 제외한다.

제3조(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및 수출 이행 여부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상속인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등록사무의 관할 등) ① (생략)	제5조(등록사무의 관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[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	2. ----- ----- ----- --이하 “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”라 하며, 해당 자동차를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8조(등록원부의 서식 등) ①·② (생략)	제8조(등록원부의 서식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<u>사업용</u> 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, 세부유형	③ ----- ----- <u>자동차운수사업</u> <u>용</u> -----

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)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
말소등록된 경우: 말소등록일부
터 9개월 이내

4. (생략)

제21조(등록번호의 부여방법) ①
(생략)

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(이하 “등록번호판”이라 한다)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

_____.

제20조(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) 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1년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등록번호의 부여방법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자동차운수사업용 ----- 말소등록된

시 부여할 수 있다.
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말소등록
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
월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
터 3개월) 이내에 자동차등록증,
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
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
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
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호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
봉인을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
및 봉인을, 제4호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
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
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자
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
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

3.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
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
4. (생략)

② ~ ⑨ (생략)

제32조(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) 법
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
동차

-----.
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-----

(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
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
달의 말일부터 6개월) 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58조제6항-----

3. 제5항제7호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) ---

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<u>9</u> <u>개월</u>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 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<u>1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60